

보관용

나눔터

2001 · 겨울

제40호

성폭력 뿌리채 흔들기 I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성문화 읽기 I

깨동, 일본에 다녀오다

성폭력 뿌리채 흔들기 II

사이버 성폭력 예방과 대응

직장내 성의통 예방과 금지에
관한 정책 어떻게 달라졌나?

나눔터 게시판

인사드립니다

2 3 4 6 8 10 12 14 16 17 19

되돌아보는 2001년 성문화 이슈

성문화 읽기 II

피임법에 땐지 걸기

여기는 상담실

왜 성폭력 특별법 개정이 또 필요한가?

2002년에는

유아 피해자 증언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가람빌딩 5층 (135-270)

일반상담 · 열린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인사드립니다.

새로 온 소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롭게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소장직을 맡게된 장정순입니다.

상담소는 성폭력이란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기에 문을 열어서 우리 사회에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폭력으로 신음하던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 4월에 개소한 이래 2001년 12월 현재까지 최영애 전 소장님을 비롯한 상근 활동가와 상담원 선생님 등 상담소의 전 구성원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10년 동안 3만 5천여 회가 넘는 상담을 해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담활동을 통해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도록 하는데 헌신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실태의 심각성을 우리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서 성폭력 예방은 물론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이제 상담소는 지난 10년간의 활동경험을 토대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성폭력상담소가 지향해야 할 상담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모형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부족한 제가 이 어려운 일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분에 넘치는 일이라 어깨가 무거움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담소의 전 구성원과 힘을 합하여 제 능력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상담소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따끔한 채찍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장정순(본 상담소 소장)

프로필

- | | |
|------|------------------------------------|
| 1986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졸업 |
| 1986 | 한국여성의전화 조사연구부장, 운영위원, 전문위원 |
| 1987 | 서울시동부근로청소년회관 상담실 근무 |
| 1988 | 현재 인하대, 단국대, 숭실대,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강사 |
| 2000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박사과정 졸업 |
| 2001 |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초빙연구원 |

유아피해자 증언 어떻게 할 것인가

허은주(본 상담소 상담부 부장)

지난 12월 20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가족모임>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가족모임 회원 20여명이 참가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에게 경찰, 검찰조사는 물론 수차례 법정진술까지 요구하는 현행 법 절차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인터넷게시판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전남 무안의 현지(7살, 가명)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아이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이로 5살된 현지가 경찰에서 5회, 1차 공판에서 2번이나 같은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모두 7번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했다. 1차 공판에서는 가해자와 대질심문까지 해야했다. 대질심문은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마주 대해야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의 강도는 경찰과 조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매우 높다. 정신과 의사들은 아이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서 대질심문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한다. 게다가 앞으로 2차 공판이 남겨져 있다.

이런 어려움은 본 상담소에 접수되고 있는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그렇듯이 어린이 성폭력 사건 역시,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주요한 판단기준은 진술과 객관적인 상황이 맞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문제는 어린이들의 경우 일관된 진술이 거의 불가능하고 번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아성추행의 경우 4~5세, 6~7세의 인지능력과 언어표현 능력으로는 이 조사과정을 소화해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더욱 확보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들의 기억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수사단계를 거칠 때마다 아이들은 반복된 진술을 해야만 하고 6학 원칙에 맞춰서 몇월, 몇일 몇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해자의 옷이 노란색이었는지, 연두색이었는지를 대답해야 한다. 만약 잘 모르거나, 잘못 대답하게 되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 번 불려가서, 매번 같은 진술을 해야되는 상황이다 보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회복되어 가는 아이도 경찰, 검찰 진술을 하고 나면 열이나고 부쩍 신경질을 많이 부리는 등, 후유증이 되살아나고 피해 당시의 기억으로 힘들어한다. 부모들은 대질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정신과 의사와 대질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무혐의로 나올 수 있다는 검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이쯤 되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못할 짓 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 고소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재판을 중단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행법상 죄를 판단하는 기관은 법원이다. 어떠한 경우에든 판사가 관여해야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에 7~8번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증인신청을 하면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명훈 변호사는 부모들이 “증거보존신청”을 해야한다고 제안한다. 증거보전이란 판사가 수사초기에 개입해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사초기에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자체가 신빙성이 적어질 가능성성이 많아진다. 사건이 발생되어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인 어린이가 판사 앞에 가서 진술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의 경우는 사건초기에 진상을 검토하지 않으면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번복될 가능성이 높다. 증거보전신청은 수사초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여러 번 진술하게 하는 고문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더 사실에 가까운 증거를 확보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성추행 재판에서 이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증거보전 청구권자가 검사와 피의자, 피고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제도의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고통을 겪어왔던 피해어린이 부모들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가족모임>을 결성하고 증거보전청구와 관련한 법개정을 청원하고자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그들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동법 184조 1항의 증거보존 청구권자에 피해자(고소인), 피해자의 친권자(부모), 후견인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판사가 수사초기에 개입한다고 해도 아이의 진술에 대한 사실판단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판단을 판사에게만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초기부터 판사, 검사, 전문가가 함께 아동의 진술을 듣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인 어린이의 눈 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누구를 밀으란 말인가?

성폭력
뿌리채
흔들기

글 | 전이지숙
동국대 '한다'

2000년 7월 5일, 학회차 일본 홋카이도에 들렀던 김 교수는 18시 35분경 현지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제자 M을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1차로 대중 음식점에 들러 간단한 저녁과 술을 함께 했는데, 1차를 M이 계산하자, 김교수는 자신이 2차를 사겠다고 제안, 들은 다시 대중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이미 1차에서 과하게 마신타라, 이때부터 김 교수는 취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화 중 M의 손, 어깨, 등을 어루만지고 머리를 가볍게 감싸안기도 하는 등 과다한 신체 접촉을 하기 시작했다. 2차를 마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진 김 교수는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며, 들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래를 한 곡 부르던 김 교수는 앉아 있던 M에게 부르스를 추자고 강요하였고, 거듭 거절하던 M은 계속되는 김교수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수십초 마주보고 춤을 추는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교수가 M을 등쪽에서부터 끌어안고 손을 복부 쪽으로 내리다가 가슴쪽으로도 손을 옮겨 M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다. M은 '그만하세요' 라며 뿌리치고 나가려 하였으나 김교수는 다시 M의 양쪽 팔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으며 고개를 돌리고 거부하는 M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추고 혀까지 집어넣으려 시도하였다.

M은 간신히 김교수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 화장실에 가서 입을 헹구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 서있던 김 교수에게 집에 찾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는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작년 그리고 올해 동국대학교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학과 김 교수 성추행 사건의 전말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찾아온 가해자에게 사과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피해자 자신, 피해자의 부모님,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 한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쓸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김 교수는 기억나는 것이 없기에 사과할 것이 없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피해자는 사회학과 학생회에 알려왔고, 사회학과와 총여학생회는 학교 측에 김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다. 학교에서는 자체 진상조사 및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고, 결국 11월 14일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교원으로서 부도덕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김교수에 대한 교수직 해임을 결정했다.

김 교수에 대한 해임결정으로 사건은 일단락 된 것처럼 보였으나 곧 김교수의 가까운 동문들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과장이었던 홍두승 교수가 탄원서를 작성하고, 이에 동조하는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전개되었다.

이후 김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교심위)에 자신에 대한 해임징계 무효 확인 청구를 제기하였고, 재심위는 이를 받아들여 "재단이사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측에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학교법인측은 다시 징계위를 열어 "사립학교법 제55(복무)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및 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위반"을 근거로 2001년 4월 9일 김교수에 대한 해임결정을 확정지었으나 교심위는 2001년 6월 19일 본 사건에 대해 다시 김교수에 대한 해임징계를 "1개월 정직으로 감경시키고 이를 2001년 4월 9일자로 소급적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근거는 바로

- (1) 김 교수가 15년 간 성실히 근무한 점
- (2) 김 교수가 모 여성단체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한 점
- (3) 동료 교수 201명의 탄원서
- (4) 성추행으로 교수가 해임된 전례가 없다는 점

이었다. 이로써 김교수는 지난 5월 9일자로 실질적으로 복직된 상태이다.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해 김 교수 이야기는 동국대에서, 그리고 여성 단체들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고, 현재 그 교수가 복직되어 수업을 맡게 된 상황에서도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많은 성폭력 사례들 중에 교수에 의해 발생되었던 성폭력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 아마도 교수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뢰성과 기존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

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교수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 교수 사건은 그나마 교수 성폭력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김 교수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김 교수가 어쩜 그렇게 뻔뻔할까?” 하는 점이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가 인정하지 않았다가를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를 음해하려는 것이라며 스스로 없이 말하기도 하였다. 그렇다. 김 교수에게 있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폭력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자기한테는 그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 여자랑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가면 더듬고 키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같이 간 여자도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오산이고 폭력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를 지지하거나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꼬리친 것 같다는 말과 가해자의 인생은 어찌하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

피해자가 꼬리쳤다…? 그렇다면 만약 자기가 그 상황이었더라면 어땠을까? 교수가 만나자는 데 안 만날 제자는 누구이며, 여자는 졸업했다고 제자가 아니라 여자일 뿐인가? 그렇다면 여자들은 상대가 남자라면 누구든지 밤에 만나서도 안 되고, 밤길 도 걸어다니면 안 되는가?

가해자의 인생이 불쌍하다…? 가해자는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계속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성폭력범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싫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는 성폭력범이 맞다. 그것도 아주 심한…

절도범은 한 번만 해도 잘 걸리지만 성폭력범은 사회가 그를 범죄자로 만들려 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걸리기조차 힘들다. 사실 늘 안 걸리다가 재수없게 한 번 걸린 것 뿐이지, 딱 한 번, 정말 인간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실수로 성폭력을 했는데 걸린 것이 아니다.

물론 설사 딱 한 번 실수로 그랬다 해도 성폭력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그의 잘못이 용서되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아마도 그는 사과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것이다.

그렇게 성폭력은 많은 오해에 둘러싸여 있다. 교육부 정계 재심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수가 15년 간 성실히 근무한 점은 당연한 것이다. 모 여성단체에서 공로패를 받았다고 하나 그것 역

시 설문조사를 도와준 사회학과 학생들과 지도 교수인 김 교수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함이었다. 동료 교수의 탄원서는 다른 교수를 통해 작성된 경우가 많고 사건을 전말을 잘 모르는 교수들이 좋은 일인 줄 알고 한 경우가 많다. 현재 자신의 서명을 철회하겠다고 나선 교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해 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경우 김 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서명을 몇 천 명으로부터 받았거늘, 교수의 교권은 중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성추행으로 교수가 해임된 전례가 없다는 근거는 정말 기가 막힌다. 전례가 없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다니…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계속 숨겨지고 있는 것은 그 피해자들이 교수와 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내 학점이 달려 있고, 앞으로 나의 공부 인생을 손에 쥐고 있는 교수가 바로 가해자일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오히려 피해자에게 화살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행이다. 성폭력을 둘러싼 사회 전반의 시각, 그리고 그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시각과 태도가 얼마나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

소매치기 당했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최소한 기분 나쁘겠다는 위로를 먼저 한다. 하지만 성폭력 당했다고 하면 술풀쳤느냐, 치마 입었느냐, 그 시간에 거길 왜 갔느냐라는 말을 먼저 한다. 그만큼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유일한 범죄이며, 그것 때문에 성폭력의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은 자신의 생활을 통제받게 되는 것이다.

성폭력이라는 것이 여성이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여성들에게 있어 그 어떤 것보다 두려운 것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게 사회학과 김교수 성추행 사건은 다른 여느 성추행 사건과 비슷하게도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덮어주는 사회의 책임이다. 사건 공개 역시 그런 의미에서 성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한 공동체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 같이 성폭력이 한 사건으로 마무리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의 위험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성폭력 예방과 올바른 성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성폭력은 이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사이버 성폭력 예방과 대응

- “Delete! 사이버 성폭력”(2001.11.본 상담소 발행)에서 발췌

김영정(본 상담소 정보사업부 부장)

사이버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평등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중성적인 아이디를 사용하라”는 식의 소극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성폭력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다. 사이버 공간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해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는 숙지하고 있었으면 한다.

사이버 성폭력 예

1. 개인정보 기입은 신중하게 한다.

사이트에 가입할 때 해당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설정해야 한다.

2.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관리한다.

비밀번호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유추해낼 수 있는 것(생일, 전화번호, 쉬운 숫자나 단어)은 피하고, 정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기록해두어서는 안되며 누구에게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친한 사이끼리 비밀번호를 알고 지내다가 나중에 이를 이용하여 허위 메일을 보낸 사례들이 있다.

3. 원치 않는 메일이나 쪽지에 답장할 필요는 없다.

불편한 대화를 유도하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다. 내키지 않는 사람과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4. 채팅방에서 사적으로 타인을 만날 때 특히 조심한다.

상대방이 주는 정보를 그대로 믿지 않도록 한다. 가해자들은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 달콤한 내용만을 게시하고 전달하기 때문이다. 실명이나 전화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5.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한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채팅방을 찾는 가해자들도 있다. 오랫동안 신뢰를 쌓은 사람이 아니라면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전에 한번쯤 생각해보자.

6.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 성폭력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만일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면 **반사이버성폭력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이용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한다.

7. 컴퓨터 기술을 익힌다.

쪽지/이메일 수신거부, 화면캡쳐 등 간단한 기능은 평소에 익혀두는 것이 좋다. 통신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일수록 갑작스런 사이버 성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기 쉽고, 가해자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기 쉽다.

사이버 성폭력 대응 방법

1. 해당 정보서비스 업체 이용하기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도중 사이버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이용하고 있는 정보서비스업체에 피해 사실과 가해 아이디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게시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이트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게시판에서는 삭제되되 사이트 관리자가 해당 게시물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에 법적 절차를 밟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증거보관은 필수이다.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용하던 사이트에서 즉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 신고기능이 일부 정보서비스업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각각의 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져 있으므로, 이용하는 업체의 도움말을 읽어보고 안내에 따라 화면을 캡처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2. 신고기관에 알린다.

커뮤니티나 정보서비스 업체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다음 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 수사센터 www.dci.sppo.go.kr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 www.cyberhumanrights.or.kr

※신고할 때 유의할 점

화면 저장을 반드시 한다. 신고할 때는 첨부기능을 이용하여 증거자료 파일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데, 이 때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 화면을 저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저장하고자 하는 창을 띄운 상태에서 Print Screen 키를 누른다.
- ②컴퓨터의 “시작”-“프로그램”-“보조프로그램”을 클릭하고 “그림판”을 실행한다.
- ③그림판 메뉴 항목에서 “편집”을 클릭한 후 “붙이기”를 클릭하거나 곧바로 Ctrl+V(복사하기)를 눌러도 된다.
- ④그림으로 복사된 화면을 파일로 저장한다. “파일명.jpg”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

이슈 성문화 2001 되돌아보는

또 한해가 저물어가는군요. 온말이면 올해의 10대 사건이니 올해의 인물이니 하는 것들을 많이 뽑는데, 성폭력과 성문화에 관한 사건들을 꼽을라치면 너무 많아서 손가락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사건보다는 논쟁 중심으로 2001년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많은 입장들이 개진되고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성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드러내준 이슈 몇 가지를 기억해보겠습니다.

성매매 대상 청소년 처벌 논쟁

6월, 검찰이 청소년 성매매를 한 청소년도 형사처벌하겠다는 법 개정서를 법무부에 요청한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매춘 청소년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점점 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매춘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청소년 성매매 현상을 줄이기 위한 법 집행기관의 의지표명이라면 먼저 청소년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인 즉 성 매수자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로 전과자 낙인을 찍기보다는 이들이 왜 매춘의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성매매는 필요악?

여성계에서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법원이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스포츠마사지 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지법 황모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범죄 폭력조직과의 연계나 미성년자의 접근 등 부정적 요인을 제거한다면, 성의 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서 일면의 긍정

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많은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경제적으로 착취되거나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매매가 남성의 폭력을 용인하고 여성의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되겠지요.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 신상공개 논쟁

공개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 신상 공개. 드디어 8월 30일에 169명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공개는 청소년성매매가 성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다른 범죄자와는 달리 유독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관용이 강조되는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가해자들에게 얼마나 관용적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후 응급피임약 시판 논쟁

한 제약회사가 수입을 추진한 사후 피임약의 수입허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이 약의 시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후 피임약 시판이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길 뿐 아니라 무절제한 성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녀 낙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본다면 사후 피

임약의 시판은 오히려 청소녀 낙태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의 성문제는 사후 피임약 시판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성문화 및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시판 찬성 입장이 더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이 약의 수입과 시판은 찬성하지만, 피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게 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성 연예인 마녀사냥

지금까지도 연예스포츠신문의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황수정씨의 마약복용사건, 언론은 마약복용이라는 범법행위 차원이 아니라 성적 스캔들 차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1999년 오현경씨 사건과 2000년 백지영씨 사건에 이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여성연예인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백인위의 가해자 명단 공개. 그 후

2000년 12월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가 운동사회의 성폭력 가해자 명단을 공개하여 그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진보'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성적 자유주의와 성폭력에 대한 문제까지 끊임없이 논점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성폭력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었지요. 치열한 만큼 건강한 성문화를 정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논쟁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KBS노동조합 강철구 부위원장이 그에 의해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여성 2명과 이들을 지원한 100인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11월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이에 대해 기소를 결정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무고죄로 대응하는 경우는 혼했지만 지금처럼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입니다. 형사상 고소기한이 지났거나 다른 사정으로 법정에서 다룰 수 없게 된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자신들의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들의 입마저 막으려는 가해자들의 행태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태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혜진스님 사망-시민사회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2001년 1월 나눔의 집 혜진스님의 간사에 대한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조사위를 구성하여 성폭력 사건을 스스로 조사하고 해결하려 한 시도로서 시민단체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건이었다. 또한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묻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사단장 성추행 사건-군대내 성폭력을 문제화하다

2001년 1월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해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성추행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실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로서의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가해자측으로부터의 회유, 협박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관련된 근거없는 비난을 접하기까지 하였다. 이렇듯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그간의 정황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자행되어 왔던 군대 내 성폭력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군대 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대학내 성폭력 학칙과 상담소의 걸음마

2001년 현재 70 %이상의 대학이 학내 성폭력 관련 규정이나 학칙을 만들고, 학교 내에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미 이 학칙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고 예방활동을 시작한 학교도 있습니다. 대학의 성폭력 정책이 아직 결음마 단계에 있지만 문화를 선도하는 대학 내에 뒤늦게 나마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또한 학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이문제가 선정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많이 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사회에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실효성있는 학칙의 제정과 활용, 그리고 상담소의 활발한 활동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대학사회가 성폭력에 대해 진일보한 의식을 형성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도해 가야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예방이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왜 성폭력특별법 개정이 또 필요한가

-2차 개정안의 골자와 추진과정-

조중신(본 상담소 열림터 시설장)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은 1993년 8월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피해여성과 여성단체들의 용기있고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여성에게만 순결을 요구하는 이중적 성윤리 기준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은폐되고 방치되었던 상황에서 일부 피해여성들이 이를 과감하게 드러내었고 여성단체들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결과로서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정된 특별법도 상담활동을 하든 가운데 여려 가지로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본 상담소는 1996년 개소 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성폭력특별법을 통한 법적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이 법의 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97년 8월에 이 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에서는 1)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를 넓혔고, 2) 장애인의 범위에 신체장애뿐 아니라 정신장애를 포함시켰으며, 3)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을 비친고죄로 전환하였으며, 4)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신뢰할만한 자의 동석이 가능해졌고, 5)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피해를 인지한 관련자들의 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98년 12월 28일 몰래카메라 촬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 삽입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성과인권위원회에서는 피해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특별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2차 개정작업을 추진해왔다. 성과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여연 소속 단체(대전여민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부설 성폭력상담실 평화의샘, 새움터, 제주여민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추방운동센터, 포항여성회, 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경남여성회 성·가족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전북여연, 전주여성의전화 등)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에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검토해왔다.

성과인권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1) 성적결정권의 침해라는 개념 규정 명시 : 제1장 총칙 제2조 성폭력범죄의 정의에서 성적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 2) 친고죄 조항의 폐지(차선책으로 고소기간의 연장) : 동법 제 15조, 18조, 19조를 삭제하고, 형법 302조, 303조의 친고죄에 관한 조항을 비친고죄로 하자.
- 3)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 : 별거상태이거나 구타 후 강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자.
- 4) 직장내 성희롱 처벌규정 신설 : 동법 제 14조 4항 직장내 성희롱 신설하자. 사업장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동료 및 하급자)도 처벌하자.
- 5)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제21조 1항을 개정하여 성폭력범죄 수사관, 재판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 및 종사자의 피해자의 신원 누설 금지와 그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자.
22조 2항에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뢰할만한 자의 동석을 비친고죄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친고죄의 경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조항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석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자.
- 6) 장단기 보호시설의 설치 자율화 : 제 26조 2호를 개정한다. 보호시설의 업무를 성폭력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것에서 장단

기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7) 의료보호 지정병원 강제 : 제 33조 1항을 개정한다.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 중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지정된 병원은 업무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8) 강간죄의 객체 확대 : 강간 피해자를 부녀자로, 성기삽입여부로만 강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행위유형을 세분화하여 항문성교, 동성간의 강간, 남성피해 등도 강간유사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9)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 : 제3조 제1항의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첨가하고 교육의 대상을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확대해야 한다.

10)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문제 등을 다루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11)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12) 성폭력범죄를 방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친권자의 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장애인 관련단체에서는 동법에 대한 개정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1) 신체장애, 정신장애가 있음은 이미 그 자체가 항거불능의 상태이므로 항거불능이란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

2)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위력과 위계가 존재하므로 위력과 위계란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

3) 22조 3항을 신설하여 미성년자나 신체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나 변호사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성과인권위원회에서는 여성계와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수렴하고 동법을 개정하기 위해 이백수, 이유정, 최은순 변호사와 수차례의 협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백수 변호사(변호인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1) 친고죄 폐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가 보완되어야 한다. 15조 삭제와 함께 형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2)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를 포함시키려면 형법 강간죄 규정을 개정하여야 가능하다.

3) 형법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였으므로 부인을 포함한 모든 여자가 포함된다.

4) 수사재판과정의 출석 및 진술은 형사소송절차상 피할 수 없다. 신뢰할만한 자의 '동석을 하게 할 수 있다'에서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면 된다.

5)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은 법개정보다는 정부에 대한 이행 촉구와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6) 피해를 방조한 모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공범으로 보고民法 924조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면 된다.

7) 비동의간음죄는 성행위의 특성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연에서는 국회 상정을 위해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회 여성특위에서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부부간 강간죄는 가정폭력방지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2) 직장내 성희롱 조항은 직장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성희롱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3) 친고제 폐지에 대한 저항이 예상되므로 반의사불벌조항으로 완화시키면 어떤가? 대신 피해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고소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가면 어떤가?

4) 현재 성폭력의 개념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성폭력을 강간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므로 sexual harassment의 개념을 정리해주는 조항을 삽입하자.

5) 강간죄의 객체확대(유사강간 등)를 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어떤가?

6)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도 보호자 동석의무조항을 명시하면 어떤가?

7)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보호장치도 추가하면 어떤가?

8) 13세 미만의 가해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조항을 삽입하면 어떤가?

9) 형법에 성폭력의 피해자를 부녀자로 명시한 조항과 강간을 성기삽입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10) 피해자 보호장치에 대한 세밀화가 필요하다.

11) 가정폭력특별법처럼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처벌하는 내용을 구분하는 법률의 분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상정한 개정안 중에서 부부강간 건과 친고죄 폐지 건이 가장 반발도 크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여연 성과인권위에서는 성 담론이 다양하고 급변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고 보고 좀더 논의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제기된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현실적인 보완을 하여 내년 국회 상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에 관한 정책 어떻게 달라졌다?

유은주(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양대 법률 중 하나인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이 지난 11월에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여기서는 개정 고평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차별금지법]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고평법의 주요 내용

개정 전 고평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사업장, 예를 들어 사장과 단 둘이 일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게다가 사업주가 가해자를 징계하는 방식의 성희롱 금지 정책 아래에서는 사업주가 성희롱 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이를 보완하여 개정된 고평법은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1인 이상 모든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범위를 확대했고, 사업주가 성희롱을 할 경우 직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개정된 고평법에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과 금지에 대한 책임을지고 있다. 사업주는 다음의 의무조항을 지켜야 한다.

1)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부실하게 실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¹⁾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것을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시행령 제4조 제3항)

2)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일단 성희롱 사실이 밝혀진 행위자에게 사업주가 적절한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4조 제1항),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지불하도록 한 것은 개정전과 같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조정했다.

3)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을 의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성희롱 판단 여부를 떠나서 '성희롱 피해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법 제14조 제2항)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4조 제3항)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경우 성희롱 관련 벌칙 중 가장 중하게 책정되어 있다.

4) 회사 내 자율적 해결장치를 마련할 의무

성희롱 관련 분쟁(남녀차별 사안 포함)을 회사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11조) '고충처리기관'은 사용자와 근로자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고충 신고가 들어 올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13조)

이렇게 성희롱 관련 조항이 개정 강화된 개정 고평법은 성희롱 예방 정책의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임으로써 성희롱 피해자가 관계기관에 상담하거나 진정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고평법은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사업주를 통해 강제하고 가해자 처벌 역시 사업주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성희롱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조절되기도 하고, 경우

에 따라서 사업주가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 조치하거나, 해고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하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성희롱 처벌의 절차와 양형에 관해 논의하고 취업규칙(사규)이나 단체협약에 세부적인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을 고려할 것' (시행규칙 제10조)을 규정하고 있다⁽²⁾.

2. 고평법과 차별금지법 상의 성희롱 규제 비교

직장내 성희롱을 다루는 또 하나의 법인 차별금지법과 고평법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우선 양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 (고평법)과 '성희롱' (차별금지법) 개념은 동일하지만, 적용 범위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고평법은 1인 이상 모든 사기업에 적용되며, 차별금지법은 1인 이상 모든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까지 적용된다. 그리고 당사자(피해자와 행위자) 범위에서 고평법은 근로자와 근로자간의 성희롱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차별금지법에서 피해자 범위는 고객과 거래처 직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제재부분에서는 양 법 모두 성희롱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다만, 고평법의 경우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고, 차별금지법은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합의를 권고·조정을 하게 된다. 다른 사건의 시효는 고평법이 3년과 차별금지법이 1년이다.

성희롱의 법적 정의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사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관련기관의 행정적 구제를 통해 해결하고 싶다면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조건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피해자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고평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또한 발생한지 1년이 경과한 사건이라면 차별금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여성부에 진정할 수가 없다.

3. 나오며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은 1999년 고평법에 성희롱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같은 해 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런 법률의 제정은 직장내 성희롱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적인 문제이기보다는 당사자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개정 고평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했지만, 그러나 아직 대부분 성희롱 피해자는 여전히 조직을 해치거나 업무 분위기를 흐려놓는 당사자로 취급받고 주변에서 암묵적으로 피해자를 따돌리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분위기로부터 피해자의 보호는 여전히 구제 가능성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 또한 대다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 발생 시 상담 창구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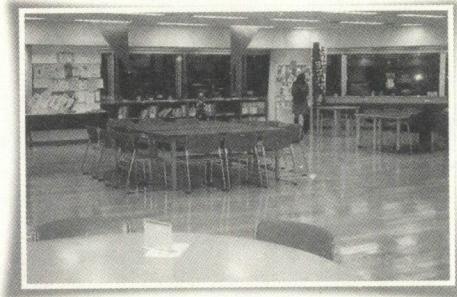
이는 비록 법이 개정되어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이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는 하지만 이 법이 의도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의 문제 해결 장치가 현장에서 구축되기까지는 노동자 당사자의 인식전환은 물론 행정 당국의 세심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1)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시행규칙 제5조)

주(2)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4조(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정한 교육 내용을 보면,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시 처리기준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각 사업장에서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깨몽, 일본에 다녀온다.

한정화(본 상담소 10기 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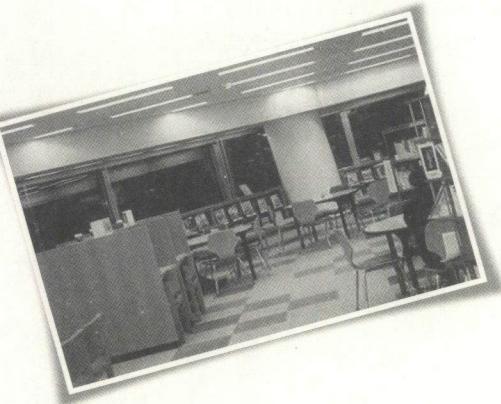
일본의 요코하마 시에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반대하는 두 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3500명의 사람들이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요코하마의 Pacifico 회의장에서 각 나라의 상황과 연대지점,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번 태국에서 열린 지역회의에서는 young people의 일원이었고 동행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매우 재미있는 두 사람(무척이나 특이한 그녀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태국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매우 의아해하더군요. 두 달만에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승격(upgrade)된 것에 대하여… 이유는 단지 young people의 자리가 다 찼기 때문이었지요…

일본은 혹독한 추위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늦가을 날씨였어요. 여기저기 피어있는 꽃들도 볼 수 있고, 사람들의 옷차림을 봐서도 결코 겨울 같지 않았어요. 특히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거의 다가 미니 스커트에 부츠를 신더군요. 일본인들은 소식을 해서인지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 없는 게 제가 관찰한 바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나라와는 멋부린다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색채감각하며 단정과는 거리가 먼 헤어스타일. 다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전형적인 모습이 피부색과 머리색이 같은 여타의 동양인들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 매우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지만,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특히 교통비가 많이 비싸서 택시의 기본요금은 6600원 정도이고, 지하철도 구간마다 요금이 다른데, 한 역을 가는데 1300원, 갈아타고 열 역 정도 가면 4000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통수단은 짹입니다.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민영화 절대 막아야 하겠습니다. ^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영어를 덜 씁니다. 심지어 관광안내책자도 거의 일본어라 한자도 모르는 언어권의 외국인들은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더군요. 자국민 중심주의인지, 자국민 관광으로도 수요가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호텔에서도 일본어뿐입니다.

일본의 음식문화는 참 재미있습니다. 푸짐한 걸 좋아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가격에 비해 매우 감질나는 양에다 그릇도 매우 아담하죠. 그리고 술을 같이 마셔도 안주는 따로 시켜 각자 먹는 모습이 저로서는 무척 소심하게 느껴지더군요. 일본에서 음식은 눈으로 먹는 것이라고 하던데 저는 눈으로 배가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본에서 제가 가본 곳들은 서울과 다를 바가 없는 경치였습니다. 패스트푸드점, 24시간 편의점, 커피 전문점 등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체인점들이 간판글자만 달리 붙이고 어디에나 흩어져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일본에서 가장 일본적인 것들을 찾고 싶어 하지만 찾기 어려운 실정이지요. 선진 문화의 수준이 정해져 있고, 일정 수준에 도달되면 똑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는, 그러면서 세계는 점차 어느 특정한 나라의 입맛에 맞게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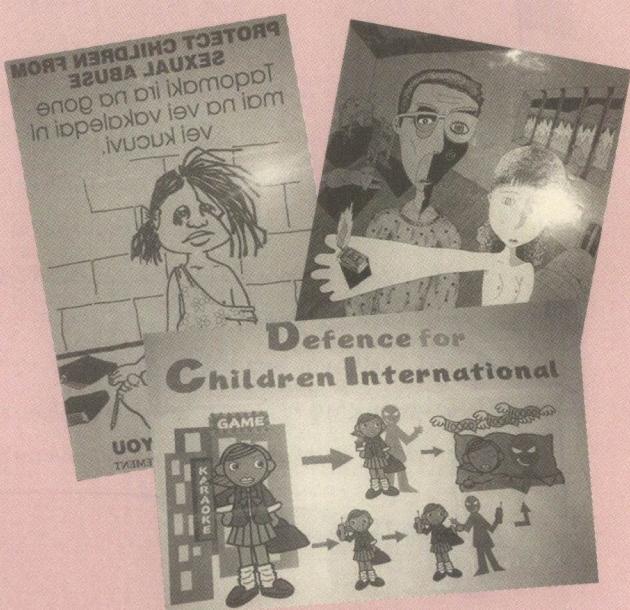
이제 study visit(기관 방문) 갔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YWCAN(Yokohama Women's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 Networking)은 여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며 성평등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성폭력상담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1988년에 세워진 여성단체입니다. 시에서 지원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요코하마 시에만 이런 여성단체가 세 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직원은 66명이며, 6명의 상담자가 한 달 평균 440명을 상담한다고 하는데 어찌나 시설이 좋고, 넓은지(육칠풍방미터) 도서관만도 상담소의 세 배 공간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일하는 분이 말씀하시길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같이 간 언니들과 함께 연신 감탄하며, 우리나라의 열악한 사회단체의 실정을 개탄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원조교제(Enjo-Kosai)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60%가 외롭기 때문이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문직 여성도,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도 자발적으로 원조교제를 한다는 데 주로 사치품을 사는데 받은 돈을 쓴다고 하더군요. 저는 원조교제를 통해서 그녀들의 외로움이 해결되는지, 원조교제 때문에 정신적인 후유증은 없는지, 성폭력이나 기타의 폭력은 없는지 매우 궁금했는데 한 가지 분명히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여타의 폭력이 드물다는 것이지요. 문득 미국에서 원조교제를 하다가 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여성단체에서 일하던 흑인여성의 얘기가 생각나네요. '그들은 한 번도 나를 내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다. 나는 동물로 비유되거나 욕설로 불려졌다.' 이런 얘기죠.

요코하마시는 매우 조용하고, 젊은이들이 노는 곳이 없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신촌과 같은 신주쿠로 진출했습니다. 졸업사진처럼 여성들의 사진을 가게 밖에 이름과 함께 진열해 놓은 것이 좀 독특하더군요. 지하철에서 음란물 광고를 볼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공중전화박스에 나체사진과 번호가 도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여성은 성적으로 상품화하는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여성운동이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 하더군요. 양극단이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이상야릇한 기분. 아무튼, 그 곳 어느 바(Bar)에서 원조교제를 목격했습니다. 60에 가까운 듯 보이는 허름한 차림의 머리카락이 얼마 남지 않은 아저씨가 화려한 차림의 두 여자아이에게 끼여서 오시더군요. 그 아저씨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것에 대한 보상과 도덕성(?)의 상실을 어떤 가치기준으로 어떻게 설명해 내야 하는 것인지 저조차도 혼란스럽더군요.

우리나라 여성단체에서 이 회의에 갔으면 무척이나 얻는 것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현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한국에서 오신 모 아저씨께서 원조교제는 한국의 특수한 문화적 상황이고, 한국인들은 크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셔서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고착될까봐 걱정된다는 ECPAT(회의를 주최한 국제 기구)관계자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자원 부족으로 허덕이는 우리나라 NGO들이 시선을 국외로 한 번쯤 돌리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일까요... 제 소견으로는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운동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좋은 대안을 얻을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에 또 이런 국제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분들도 만날 수 있기를... 혹시 또 모르죠... 제가 단체의 장이 될지... 히힛.



피임법에 딴지기

김언정(본 상담소 성평등교육문화센터 부장)

예전에 아간사로 일할 때였을 거다. 근무를 하러 온 지킴이가 성교육 책을 읽다 말고 내게 물었다.

“언니, 언니는 결혼하면 피임을 뭐로 할거야?”

“글쎄...”

“근데, 있잖아. 이렇게 많은 피임법들 중에서 맘에 드는 피임법은 하나도 없지 않아?”

듣고 보니 정말 그랬다. 어떤 그렇게 하고 (?) 싶은 피임법이 없던지.... 근데 그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나니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결혼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피임을 하는지가. 그래서 친언니를 비롯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피임방법들을 대충 조사해 봤다. 놀랍게도 결혼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피임법은 질외사정과 배란주 기법이었다. 개중에는 실패한 사람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맹신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두 가지 피임법이 대책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문득 의문이 하나 생긴다. 왜 여성들은 그 지킴이처럼 기준에 나와 있는 피임법들을 보면선 맘에 드는 피임법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필이로 이 질문은 확률 50%의 피임법인 질외사정과 배란주 기법을 많은 기혼여성들이 대책없이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 방법들이 주로 여성의 몸에 기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기준에 나와 있는 피임법들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질 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게 하거나 수정란이 착상되지 않게 하는 걸 어렵 수 없다 손치더라도 정자를 죽이는 약(상장제)까지 여성의 몸 속에 넣고 있으니 말이다. 그뿐인가. 약이면 약, 주사면 주사, 장치면 장치 모두 여성용 밖에 없다. 콘돔은 여성용이 나오더구만 약이나 주사는 왜 남성용이 안 나오는지...

뿐만 아니라 나를 더욱 열받게 한 걸 최근에 새로 나온 ‘피임 패치’였다. 다른 일 하느라고 뉴스를 간접으로 듣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이 이야기가 나오길래 뭐 새로운 걸가 싶어서 기대를 갖고 TV 앞으로 다가갔었다. 근데, 들어보니 기가 막혔다. 피임약과 똑같은 기관으로 여성에게 흐르몬을 투여하는 걸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아니라 파스처럼 생기 패치 형태라는 거였다. 1주일에 한번씩 갈 면 되고 수명이나 사위를 해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나름대로 자랑을 하고 있었다. 유방을 제외하고는 허리나 엉덩이 등 아무데나 붙여도 되는데, 뉴스에는 유독 매끈한 허리에 이 패치를 붙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나오면서 관심증까지 총족시켜 주고 있었다.

나중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조금 편하다는 거 빼놓고는 그다지 장점도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부작용이 적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성공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여성의 몸을 사용하는 기준의 피임법들에서 사고방식이 전혀 발달되지 않은 결 확인하면서 짐작엔 이 났다.

인터넷에서 보니 미국에서 남성용 피임법이 개발 중에 있다고는 했다. 2005년까지는 남성용 피임주사가 개발되고 2015년까지는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1년짜리 피임백신을 개발 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남성용이 나오면 뭐하나. 여전히 피임은 여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말짱 소용이 없을 텐데.... 그러니 정말 문제인 건 남성 피임법 자체가 부재한 거 보다는 남성들의 피임에 대한 의식이 부재한 거라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참암 오는 날밤, 남성용 피임법의 단점을 보완하면 남성들로 하여금 피임을 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 중 하나, 남성들이 콘돔을 잘 안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씌우기가 귀찮고, 또 공기를 확실히 빼야하는 등 정확하게 사용을 못하기 때문이니까 이런 기계는 어떨까. 비오는 날 백화점에서 우산 넣으면 비닐을 자동으로 씌워주는 거 같은 식으로 콘돔을 씌워주는 기계. 남성이 음경을 넣고 버튼을 하나 누르면 콘돔이 자동으로 착용(?)되는, 집집마다 이런 기계가 암방에 하나씩 있다면, 그러면 어떤 까. 밥상을 정화하는 상상만으로도 무지 즐거운 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함께 할 사람 어디 없나?

저는 한국 성폭력상담소를 후원하고 있어요.

김경선(본 상담소 후원회원)

성폭력이라고 하면 대개 남성이 여성에게 힘을 행사하여 강압적으로 성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가 다 변화되고 통신 매체 등이 발달함에 따라 그 범위가 넓어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게 되었다.

나 자신도 광범위한 피해자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한동안 며들썩했던 몰라커마라 때문에 학교나 지하철 등 공공 장소의 화장실에 가는 게 깨림직하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는 도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음담패설을 해서 그 이후 채팅을 안 하게 되었다. 내가 받은 피해는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겪어야 하는 부당함을 느끼게 했고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하였다.

TV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접하면 거의 대부분 피해자가 여성인 것을 볼 때 여성의 사회화 과정은 여성의 약자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하는 하는 생각이 든다. 여성학 관련 책에서 여성에게는 강간공포증이 무의식에 중에 있다고 한다. 늦은 밤에 집에 가기 위해 골목길을 걷다 보면 막연한 불안함이 생겨 발걸음이 빨라진다.

내가 만약 물리적인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된다. 내가 받은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그러나 상담소를 알게 되면서부터 든든한 백이 생긴 기분이 들었다. 만약 주위 사람이 이런 일로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라고 권할 것이다.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짐을 덜어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거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상담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그러기 위해서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상담소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잘못된 남성성을 강요하거나 묵인하는 사회 분위기도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담소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되어 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새로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광제 김연정 김원희 김찬균 김형수 박병태 박선자 서명선 성은주 성치상 송문숙 신동현 신성희 안영섭 원형섭
유경숙 이성수 이해웅 전민숙 정금자 정한수 정호성 채인기 최명현 최은미 추은숙 한재철

10월부터 11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시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식 구나은 김강자 김경희 김미경 김미숙 김미옥 김선택 김소명 김언정 김영애 김영정 김옥선 김은정 김인옥 김일륜
김준호 김지선 김진희 김해경 김현란 김혜숙 김화영 남순열 노미순 노주희 문효진 민응기 박미향 박민주 박선희 박소연 박순주
박윤숙 박진성 박진숙 박혜숙 박혜진 배은경 배희진 서성숙 설연자 손종성 송성애 신동한 신은주 오숙희 오희선 유은주 윤남희
윤숙경 이경미 이경애 이경은 이덕화 이명선 이상근 이상은 이선이 이소진 이애란 이영분 이은정 이정아 이푸른메 이효숙
임민희 임순영 임자영 임종은 장윤경 정경란 정남운 정대현 정유순 조소연 조중신 주명희 주서현 지인순 최동석 최영애 최옥경
최용득 최지녀 추은숙 하은주 한보경

평생회원

변혜정 이미경

상담소(열림터)에 물품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12월 13일 국제존타1클럽 이승자 회장과 산하 ZISVAW위원회 이영자 위원장이 상담소를 방문하여 성폭력피해자 특히 열림터 입소자들을 위하여 50만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국제존타1클럽은 UN산하의 학계, 정계, 경제계의 전문여성들의 모임으로서 ZISVAW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학대 근절을 위한 모임입니다. ZISVAW에서는 1년에 100만원씩 피해자를 위한 후원을 약속해주셨습니다.

2. 12월 17일 여성부에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상담소를 방문하여 열림터 입소자를 위한 후원금 5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후원금은 열림터 입소자의 방한복 마련과 겨울 캠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3. 송희현님께서 진공청소기를 기증하여주셨습니다.

한 해 보내기

이렇게 보냈어요.

12월 15일 상담소에서는 상담원 선생님, 지킴이, 나눔이, 상근자, 열림터 아이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1 한해보내기는 새로 오신 장정순 선생님의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공로상은 3만회 째 상담을 받은 김하연씨, 상담소 홈페이지 디자인과 개편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혜정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빙고게임, 미스코리아 응변대회 등의 게임을 하면서 한 해 이슈를 돌아보고 벼룩시장에서는 검도 호구, 가방 등이 열띤 경매를 통해 팔려 기금으로 모였습니다. 음식나누기 시간에는 도란도란 모여 앉아 간식을 먹으며 한해 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상담소의 작은 잔치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는 자리를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발간자료를 소개합니다.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백서” 발간 안내

1990년대 중반 1심에서 3천만원 배상판결을 받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의 백서가 최근 발간되었습니다. 본 상담소를 포함하여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발간한 이 백서는 상, 하 두권 180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무려 7년이라는 기간을 거쳐 승소를 이루어내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담겨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증언, 판결문을 비롯한 재판자료들과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각종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 시민운동, 여성운동, 성폭력 근절운동의 역사적 자료로서, 또 법적으로도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판례로서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상,하권 4만원/택배 우송료는 별도) 구입문의 : Tel. 576-7128>

2002년에는...

새 천년 그 설레던 새아침의 기억이 바로 어제 같을테,
어느덧 새로운 천년의 세 번째 새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상담소를 지켜보아 주셨던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은 상담소가 개소한지 11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의 세월동안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했던 이들의 노고를 든든한 기댑으로 받아 안고,

2002년에는 새로운 도약과 전진의 첫걸음을 딛는 상담소이고자 합니다.

올 한해는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 싱그러운 새벽공기처럼 다가오는 한해의 시작입니다.

그대와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상담소 식구들의 새아침 새로운 여정에 빛을 더해주십시오.

올 한해도 항상 당신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평안하시며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손을 내려주고 내 손은 네가 주고

혹 자세 대로 쓰는 것보다 틀어서 쓰듯이 하는 것의 낯빛은 고속의 속도가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지
나름의 차이인 속도의 차를 생각나게 만들어 준다. 예술이라는 능률화 기기도 속도의 차를 생각나게 만들어 볼 때에도
다양하다. 홍파에서는 물을 놀라게 하는 경계면에서 물의 경계면 서로 물을 놀라게 한다. 홍파서는 면적
물과 유연성을 둔화시키는 빛을 수 있다. 사실 면으로 홍파를 만드는 속도가 높아져 경계면을 만들거나
작동하여 속도는 높지만 물은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면으로 홍파를 만드는 속도를 높여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2만 6천여 회의 성폭력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상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상담소에서는 이를 소중히 받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본 상담소의 소식지[나눔터]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담소의 각종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지금 전화하여 월 단위, 혹은 연 단위로 후원금을 약정하여 주십시오. (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니다. 귀하(사)가 기부하신 상기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에 의거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비는 자동이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농협	037-01-194301
조흥은행	308-01-133092
증소기업은행	216-013179-01-018
한빛은행	309-042818-13-002
평화은행	025-01-0000-541
외환은행	224-22-02532-8
한빛은행	441-04-107528
신한은행	219-05-001717

문의 : 유은주 부장 / (02)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각 기업 내 강연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 어린이 성폭력 / 직장내 성희롱 /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 성교육 지도자 교육 / 자녀 성교육 지도 / 유형별 성폭력 상담 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의뢰 문의 : 김언정 부장 / (02)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 열림터 : (02)529-4271~2

 본 상담소 심벌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애’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 **이사** 김삼화·문혜란·박찬운·이명숙·이상엽·이은미·최영애·최보원·최은순·홍순기 ● **감사** 회계사/베팅 세무사/차재승 ● **자문위원 교육** 교사/김성애·차옥덕 교육학/김인수·정유성·현기섭 문화인류학/정병호 사회학·교육심리학/강영숙 자널리스트/박미라 윤리교사/백영애 청소년교육/이규미 ● **법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고순례·김삼화·김의창·남성렬·박성호·박찬운·손명숙·이명숙·이백수·이유정·이향아·임종인·강경호·장철우·정성광·정연순·최은순·최현희·하일호 경찰/김강자·이금형 ● **상담**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홍·임상심리상담가/전양숙 심리학/김순진·김정규·이윤로·이정호·이혜성·정연길·정남운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이영분·이원숙·한인영 상담심리학/권해수 ● **의료** 가정의학/김종구·정영숙 법의학/강신봉·권일훈·문국진·서중석·이경룡·이윤성·최영식·황적준 비뇨기과/이유식·이윤수 산부인과/김주필·김현식·김홍배·문영규·민웅기·박금자·박종민·손인숙·윤경·윤여정·이길여·이신애·이옥주·임용택·정경원·조삼현·조정현·최보원·홍순기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신의진·최보문·임태식 외과/오세민·주수호 예방의학/이용호 응급의학/원형섭 임상병리학/강정옥·문혜란 정신과/김광일·김병후·김정일·남정현·박수용·박진생·양창순·유재혁·이호석·윤영민·이수경·전지홍·조맹재·최진숙 치과/이상엽 한의학/강명자·김영선·김효선·서은미·이은미 호흡기내과/천병태 흉부내과/안철민 ● **재정** 프리랜서/여영 회계사/베팅 센터 공동위원장/박정순 자문위원 신문방송학/강남준·강명구·김양희·김훈순·원용진·전석호 논설위원/지영선 ● **정보사업** 통신/김영준·윤영민 ● **홍보출판** 신문방송학/김용숙·최선열 언론인/전여옥 여성학/박혜란·오숙희 연극/김지숙 출판/권혁진·이인자 PD/고학찬 조소/홍성도 ●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 센터 공동위원장/박정순 자문위원 신문방송학/강남준·강명구·김양희·김훈순·원용진·전석호 논설위원/지영선 ● **부설 성폭력문제 연구소** 사회복지학/이원숙 사회학/김준호·심영희 여성학/김은실·변혜정·이제경·장필화·조주현·이미경·임순영 철학/이상화·정대현 심리상담가/권진숙 이동복지학/강화정·청소년연구원/김옥순 법학/김선욱·김엘림·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학/박진숙 ● **소장** 장정순